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

제출연월일	2006. 8. .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통합과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내용을 삭제하고,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일괄정비 개정
- 지방세의 결손처분시 건당 5백만원 이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7호), 이와 관련된 현행 3개호를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함.

-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3호)
-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6호)
- 거창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7호)

나. 기능이 상실된 결정사항 3개호를 삭제함.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현행 제4호)
 -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현실과 부합되어 삭제
 -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능하며, 행정심판의 심의는 도 심의사항임.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현행 제14호)
 - 2000. 7. 19일 신설된(현행 제16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현행 제15호)

- 2005. 1. 15일 조례 폐지되어 심의사항 삭제

다.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호).

-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당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시 시군조정위원회 심의 권고사항으로 체납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라. 신설 및 삭제로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 경상남도 세정과-3206(2006. 3. 27) 조례개정 권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 결과 :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입법예고 생략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채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하고, 제8조중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3. (생략) 4. <u>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u> 5. <u>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9. <u>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0. <u>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6. (현행 제10호와 같음) 7. <u>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u> <삭 제>
13. <u>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u> 14.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u> 15. <u>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 16. <u>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 17. <u>거창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8. <u>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8. <u>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 9. <u>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u>
11. <u>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12.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1(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 ①~③(생략)</p> <p>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의2(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 ①~③(현행과 같음)</p> <p>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